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· 이소라 부위원장님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
의원입니다.
- 쾌적하고 공정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발의된
‘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서울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
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식품위생 안전 관리 강화
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특히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음식판

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명시하고, 영업 자격,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을 조례로써 정하고 있습니다.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영업 수요와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영업장소를 지정하거나 금지하는 한편, 영업 허용 수량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음식판매자동차가 공정한 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- 또한,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기준, 위임 내용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, 조례 형식에 맞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